

# 정치자금 기부금 제한법과 이익집단: 미국 주 의회 선거를 대상으로 한 기부금 제한법의 재검증\*

엄기홍 |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

본 논문의 목적은 주지사 선거에서 나타나는 기부금 제한법의 규제적 효과가 주 의회에 선거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재검증하는데 있다. 또한 기부금 제한법이 현직자 위주의 기부경향을 강화시키는데에 대한 논의를 재검증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재검증의 필요성은 주지사 선거와는 달리 주 의회 선거에는 여러 명의 현직자가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정치기부금 제한법이 정치자금 기부행태에 차별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34개 미국 주의회 선거를 분석한 결과, 기부금 제한법은 이익집단, 특히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횟수와 기부금액 모두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경향은 현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반면 기부금 제한법이 현직자 위주의 기부경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경험적 결과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기부금 제한법은 “도전자”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연구결과는 제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주지사 선거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본 논문은 이익집단의 기부를 제한하고 있는 기부금 제한법의 현 추세는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정치자금 기부금 제한법, 미국 주 의회 선거, 이익집단, 음이항 모델, 토빗모델

---

\* 데이터 사용을 허가해 준 “주 정치 정치자금에 관한 국가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n Money in State Politics <http://followthemoney.org>)에 감사드립니다.

## I. 문제제기

미국 정치자금법의 목적은 정치적 평등의 달성에 있다. 정치적 평등의 달성은 민주주의 운영의 기본전제이기 때문이다. 정치자금에서의 정치적 평등이란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줄이고 시민들의 참여를 증대시킴으로써 개인 또는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평등해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정치자금법의 목적은 최근 통과된 “양당 정치자금 개혁법”(The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of 2002)과 연방선거위원회 위원장인 스캇 토마스(Scott E. Thomas)의 연구보고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sup> 이와 같은 선상에서 미국의 많은 주들은 규제적인 기부금 제한법을 채택함으로써 정치자금에서의 정치적 평등 달성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부금 제한법의 대중성에도 불구하고 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라프(Sorauf)는 후보자에 대한 이익집단의 기부 가능 금액이 축소될지라도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집단은 법의 허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orauf, 1992). 법의 허점 중 일례로서 기부금 제한법으로 인한 기부금의 전이현상을 들 수 있다. 즉 박스-스토프지마이어나 다우(Box-Steffensmeier and Dow, 1992)는 기부금 제한법이 강화될 경우 이익집단은 현 선거구내의 현직자에게 기부하는 금액은 축소되지만, 잔여 예산을 다른 선거구의 현직자에게 기부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부금 제한법은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축소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sup>2</sup>

- 
1. 연방선거위원회 위원장인 토마스(Thomas, 2005)는 대통령 경선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보고서에서 정치자금의 정치적 평등을 역설하며 공명선거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2. 주지사 선거의 경우 잔여예산의 전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켄터키 주의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이익집단이 아이오와 주지사 선거에 자금을 기부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반면에 주 의회 선거의 경우 잔여예산의 전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켄터키 주의 정책과 관련된 정책결정은 다수 주 의원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기부금 제한법의 문제점은 정치기부금 제한법이 현직자 중심의 기부경향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논의이다(Aranson and Hinich, 1979; Box-Steffensmeier and Dow, 1992; Hinich, 1977; Snyder, 1990, 1993). 앞서 언급한 박스-스토프지마이어나 다우(Box-Steffensmeier and Dow)의 주장에서도 보여지듯이, 기부금 제한법으로 인하여 해당 선거구내에서의 기부금액이 제한될 경우 선호도가 높은 현직자에 대한 기부를 포기하지 않는 대신, 당선 가능성이 낮은 도전자에 대한 기부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발생한 이익집단의 잔여 예산은 다른 선거구의 현직자에게 기부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익집단에 대한 현직자 기부경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와 같은 기부금 제한법의 논의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미국 주 의회 선거를 대상으로 기부금 제한법이 기부횟수와 기부금액을 증대 또는 감소시키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기부금 제한법이 현직자 우위의 기부경향을 강화시키는 지에 대한 검증도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를 실행하고 있는 34개 주 64개 주 의회 선거가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이론적 유추에 제한되어져 있는 다수의 기존연구에 경험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Aranson and Hinich, 1979; Hinich, 1977). 둘째, 정치자금법과 정치자금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보다 적절히 평가할 수 있다. 경험적 연구를 수행한 몇몇 기존연구는 정치자금법과 정치자금의 직접적 관계를 분석하기보다는 정치자금법과 선거비용간의 관계(Hogan, 2000; Stratmann and Aparicio-Castillo, 2001), 또는 정치기부금의 성향에 기반한 정치자금법의 효과에 대한 유추(Box-Steffensmeier and Dow, 1992; Snyder, 1990, 1993)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과 정치자금 간의 직접적 관계를 분석하는 본 논문은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데 보다 적절하리라 본다.

셋째, 주 의회 선거를 분석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이 선거형태에 따라 다른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즉 엄기홍(200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부금 제한법은 “주지사” 선거에 있어서 이익집단의 기부횟수와 기부금액 모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지사 선거와는 달리 주 의회 선거에는 여러 명의 현직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부금 제한법이 강화될 경우, 이익집단은 쉽게 자신의 잔여예산을 다른 선거구의 현직자에게 기부함으로써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결국 기부금 제한법의 실효성 상실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기부금 제한법이 선거형태, 즉 주지사 선거와 주 의회 선거에서 따라 다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끝으로 다양한 정치제도의 효과를 연구할 수 있는 장으로서 미국 주의회를 한국 학계에 소개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미국의 주 의회는 다양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기간 동안 34개주가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단순다수 소선거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주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또는 다양한 정치제도의 효과를 예측하는 데 미국 주의회가 분석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연구의 결과와 함의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자금 기부금 제한법은 이익집단, 특히 기업의 기부금 기부횟수와 기부금액 모두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이 연구결과 밝혀졌다. 둘째, 기부금 제한법은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현직자 우위의 기부경향을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부금 제한법은 기업의 현직자 우위 기부경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와 같은 기부금 제한법의 규제적 효과는 현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도전자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비교했을 때에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부금 제한법이 의도한 바와 같이 이익집단의 기부횟수와 기부금액을 줄이고 있음으로, 기부금 제한을 강조하는 미국 정치자금법의 현재 노선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한국의 정치자금 제도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 또한 크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후원회 기부금을 제한하는 한국의 기부금 제한법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지를 본 연구결과에 유추하여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부금 제한법의 효과에 관한 이론과 가설을 다음 장에서 서술하고, 도출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분석자료와 통계적 방법론을 제3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경험적 결과를 해석하며, 끝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의 함의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기존 문헌과 이론

정치 기부금 제한법이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왜 기부자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 기존 문헌은 기부자의 기부동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Hersch and McDougall, 2000; Morton and Cameron, 1992; 엄기홍, 2004). 첫번째 유형은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룹(이익집단 기부자, particularistic contributors)이고,<sup>3</sup> 두 번째 유형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고자 하는 그룹(동조적 기부자, universalistic contributors)이다.<sup>4</sup>

“이익집단 기부자”는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에 영향력을 끼치고자 정치자금을 기부한다. 따라서 이익집단 기부자는 자신들의 투자가

3. “Particularistic contributors”은 기업(corporations), 노동조합(labor unions), 그리고 관련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s)를 총칭하여 일컫는다. 따라서 “Particularistic contributors”를 직역하면 “특정정책관련 기부자” 또는 “특정이해관련 기부자”로 번역할 수 있으나, 기업 관련 정치활동위원회와 노동조합 관련 정치활동위원회에 의한 기부금을 이익집단 기부금으로 간주하는 이익집단 문헌들에 근거하여 “Particularistic contributors”를 “이익집단 기부자”로서 해석하였다(Berry, 1997: ch. 7; Conway, Green and Currinder, 2002).

4. 또 다른 형태의 기부자로서 사회적 기부자를 들 수도 있다(Bibby, 1998; Mutz, 1995). 사회적 기부자란 집회활동에 참가하기 위하여 또는 사회적 압력을 피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행위자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기부자와 동조적 기부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부자의 기부목적이 참여에 따른 “만족”에 있다면, 사회적 기부자와 동조적 기부자간의 기부동인에 있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 즉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에게 투자하는 경향이 크다(Morton and Cameron, 1992; Snyder, 1990, 1993; Welch, 1974, 1980). 반면 동조적 기부자는 “소비”로서의 기부행태를 보이고 있다(Fuchs, Adler and Mitchell, 2000; Morton and Cameron, 1992; Mutz, 1995; Poole and Romer, 1985; Snyder, 1990, 1993). 마치 개인이 자선단체에 기부함으로써 만족감으로 느끼듯이, 동조적 기부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의 선거활동 보조에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낀다(Snyder, 1990, 1993).<sup>5</sup> 본 논문은 이 중 이익집단 기부자의 기부행태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6</sup>

애란슨과 히니취(Aranson and Hinich, 1979)에 의해 체계화된 이익집단 기부 이론은 다음과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sup>7</sup> 이익집단은 선거 이후 결정될 정책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또는 정책에 의한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다.<sup>8</sup> 즉 정치자금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적 보상을 목적으로 기부됨으로써 ‘기부금  $\propto$  정책적 보상’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기부금 제한법의 목적은 이익집단이 기부할 수 있는 기부금액을 제한시킴으로써 이익집단의 기부금과 정책간의 관계를 희석화시키는 데 있다. 기부금 제한법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하여 돈과 정책 간의 관계를 줄일 수 있다(엄기홍, 2004 Eom and Gross, forthcoming). 첫째, 이익집단이 기부할 수 있는 “절대액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익집단이 후보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후보자에게 중요한 가치로서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소규모 금액이라고 가정하자. 이와 같은 경우 후보자는 이익집단 기부금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정책적 보상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 보상을 목적으로

5. 이익집단 기부자는 일반적으로 기업, 노동조합, 그리고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s)의 정치 자금기부와 관련되어 있다. 동조적 기부자는 일반적으로 개인, 정당, 이슈그룹(ideological/issue groups)과 관련되어 있다.

6. 기부금 제한법이 동조적 기부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엄기홍(Eom, 2006) 참고.

7. 이익집단 기부행태의 자세한 논의는 엄기홍(2004)을 참고.

8. 전자는 “보험정책”으로서의 정치자금 기부이며, 후자는 “투자정책”으로서의 정치자금 기부이다.

기부하는 이익집단은 더 이상 기부할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둘째, 이익집단의 기부가치를 “상대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선거를 치루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 이상이 필요한 후보자는 기부금 제한법으로 인하여 축소된 금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정치자금을 찾으려 할 것이다. 이익집단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보자는 동조적 기부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의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일부 동조적 기부자가 이와 같은 후보자의 요구에 응할 경우(Eom, 2006), 비슷한 기부금액의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결국 이익집단 기부금의 상대적 가치 축소라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이익집단의 기부금 액수가 다른 기부자들 액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경우, 후보자들은 이익집단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줄어들며, 결과적으로 이익집단은 자신의 기부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줄어들어 따라 기부동인을 상실하게 된다.<sup>9</sup> 물론 기부금 제한법의 현실적 효과는 두 가지 통로가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기부 가능한 액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진다면, 즉 이익집단의 기부금이 절대적 액수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적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는 수준 이하로 낮추어 진다면 이익집단의 정치자금 기부 동인은 상실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험적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1: 기부금 제한법이 강한 주일 경우, 후보자에 대한 이익집단의 기부 횟수는 감소할 것이다.

가설 2: 기부금 제한법이 강한 주일 경우, 후보자에 대한 이익집단의 기부 금액은 감소할 것이다.

반면 일련의 학자들은 기부금 제한법이 현직자 중심의 기부경향을 강화시

9. 모든 이익집단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부금 제한액을 도출하는 것은 본 논문의 분석범위를 넘어서는 주제이다. 이익집단의 기부에 따른 정책적 보상은 보상의 수준에 따라 기부금의 절대적 액수와 상대적 액수가 달리 설정된다. 따라서 돈과 정책간의 관계를 제한할 수 있는 기부금 제한액은 이익집단마다 달라지게 된다. 본 논문은 기부금 제한의 수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익집단의 기부행태가 달라지는 지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Aranson and Hinich, 1979; Box-Steffensmeier and Dow, 1992; Hinich, 1977; Snyder, 1990, 1993). 예를 들어 맥데비트(McDevitt, 1978)의 연구에 기반한 박스-스트븐지마이어와 다우(Box-Steffensmeier and Dow, 1992)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기부금 제한법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지사에게 의한 정책결정의 경우와는 달리 주 의회정책 결정의 경우 한 명의 현직자가 아니라 다수의 현직자들에 의하여 정책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익집단이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경우, 잔여 예산을 당선 가능성이 낮은 같은 선거구의 도전자에게 기부하기 보다는 다른 선거구의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 즉 현직자 후보에게 기부함으로써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끼치려 할 것이다. 이는 기부금 제한법이 강화될 경우 도전자에게 기부될 수 있는 기부금이 다른 선거구의 현직자에게 기부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기부금 제한법은 현직자 중심의 기부경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다음과 가설로 정리할 수 있다.

가설 3: 이익집단의 기부횟수에 있어서, 기부금 제한법은 도전자에 비해 현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가설 4: 이익집단의 기부금액에 있어서, 기부금 제한법은 도전자에 비해 현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여지듯이 기부금 제한법은 다양한 예측을 낳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예측에 대한 경험적 결과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제시된 가설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론과 사용되는 경험적 자료를 논의하고자 한다.



### III. 분석자료와 방법론

전 장에서는 기부금 제한법에 대한 일련의 이론적 논의와 가설들을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데 이용되는 분석자료와 통계적 방법론을 고찰하겠다.

#### 1. 분석자료

본 논문의 목적은 기부금 제한법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특히 기부금 제한법이 이익집단의 정치자금 기부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분석대상을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 의회로 한정시켰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대)선거구제에서는 동일한 선거구에 현직자가 여러명 존재하는 반면, 소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당 한명의 현직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양당 중심의 미국 주의회 정치에서는 한명의 현직자에 도전하는 한명의 도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부금 제한법이 강화될 경우 이익집단의 기부가 다른 선거구의 현직자에게 전이되는지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거구의 경우 현직자가 한 선거구내에 두 명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익집단의 기부가 같은 선거구내에서 전이되는지 또는 다른 선거구에게로 전이되는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논문의 연구 함의가 보다 폭 넓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 차원의 국회의원 선거와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모두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결과와 함의는 이들 선거에도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분석되는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정치기부금의 기부횟수와 기부금액으로서 측정된다. “기부횟수”란 해당 선거기간 내 해당 선거구 내에서 개별 주요 정당 후보자에게 기부된 총 기부수이다. “기부금액”이란 해당 선

거기간 내 해당 선거구내에서 개별 주요 정당 후보자에게 기부된 금액을 통화조정치(consumer price index)로 나눈 금액을 일컫는다.<sup>10</sup>

정치 기부금 데이터는 1999년부터 2002년 동안 34개 주 64개 주의회 선거에서 주요 정당 후보에게 기부된 이익집단의 개별 기부금이다.<sup>11</sup> 본 논문의 분석단위는 후보자이며, 따라서 이익집단의 개별 기부금은 해당 선거년도 해당 선거구내 후보자별로 합산되었다. 정치자금 데이터는 “주 정치 정치자금에 관한 국가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n Money in State Politics)에서 수집되었다.<sup>12</sup>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주요한 독립변수는 기부금 제한법이다. 기부금 제한법은 규제된 개체 간에 누적적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Gross and Goidel, 2003; Mablín and Gais, 1998). 특히 기업, 노동조합, 정치활동위원회 관련 기부금 제한법은 상호연관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치활동위원회의 기부액수가 제한된다면 기업 또는 노동조합이 기부할 수 있는 기부액수 또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특성이 있다. 이는 본 논문의 분석기간 내에 규제된 기부금 제한액 간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각 제한법을 동시에 삽입할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무의미한 관계로 결론내리는 오류(타입 I)를 범할 수 있다.<sup>13</sup>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부금 제한법을 하나의 종합지수(composite or index variable)로 만든 후 분석에 삽입하였다(Gross and Goidel, 2003; Hogan, 2000).

기부금 제한법 변수의 조작화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제한법에 대하여 단

10. 통화조정치는 1999년 기준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하여 연별로 계산되었다. 통화조정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연별 통화가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데이터는 미국 노동청(<http://data.bls.gov/cgi-bin/cpicalc.pl>, 방문일자: 2006년 1월 10일)에서 수집되었다.

11. 주의회 선거 후보자에 대한 “주 정치자금에 관한 국가연구소”의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작업은 1999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연구되어지는 주와 선거연도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고.

12.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한 요약치는 부록을 참고.

13.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결과와 타입 I 그리고 타입 II 오류에 대해서는 구주 아러티(Gujarati, 2003)를 참고.

순 가변수를 만들었다. 즉 기업, 노동조합 또는 정치활동위원회의 기부 가능 금액에 제한이 없을 경우 0으로 제한이 있을 경우에 1로 처리하였다. 이후 기업, 노동조합, 그리고 정치활동위원회 가변수를 합산하였다. 따라서 “기부금 제한법” 변수는 0(무제한)부터 3(기업, 노동조합, 그리고 정치활동위원회 모두에 있어서 제한액이 있을 경우)까지 변화한다.<sup>14</sup> 주차원의 정치 기부금 제한법은 “선거자금법”(Campaign Finance Law) 해당 년도에서 수집되었다.

기부금 제한법과 이익집단 기부금간의 허위관계(spurious relationship)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관련 통제변수와 인구통계관련 통제변수를 모델에 삽입하였다. 정치관련 통제변수는 후보자 유형, 개인 기부금, 정당, 후보자 간 경쟁, 주별 정당지지도, 의회전문화 변수를 일컫는다. 주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인구통계 관련 변수는 주별 인구 변수와 주별 가변수이다.

기존 연구에서 보여지듯이 후보자 유형은 이익집단의 기부금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이다(Box-Steffensmeier and Dow, 1992; Gross and Goidel, 2003; Stratmann and Aparicio-Castillo, 2001; Snyder, 1990, 1993). 대부분의 선거에서 나타나듯이 현직자는 도전자에 비하여 많은 기부금을 받는다. 그러나 공석후보자(open seat candidates)와 비교해서 현직자 또는 도전자기 이익집단으로 많은 기부금을 받는지는 잘 알려지고 있지 않다(Eom, 2006). 후보자 유형변수는 세 개의 가변수로 측정되었다. 후보자가 현직자일 경우에 “현직자” 변수는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도전자일 경우 “도전자” 변수는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그리고 공석후보자일 경우 “공석후보자” 변수는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후보자 유형에 대한 정보는 주 정부 선거관련 사이트로부터 모금하였다.

후보자가 거두어들인 정치자금은 당선가능성에 대한 지표로서 종종 인식되어진다(Welch, 1980). 후보자가 많은 정치자금을 보유할 경우, 특히 일반 개인으로부터 많은 정치자금을 모금할 경우, 이익집단은 해당 후보자가 당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익집단은 개인으로부터

14. 하나의 대안으로서 엄기홍(2004)은 변수의 누적적 성향에 따른 방식으로 기부금 제한법 변수를 조작하였다. 그러나 그로스과 고이들(Gross and Goidel, 2003)이 증명했듯이 기부금 제한법의 측정방식 선택은 제한법 효과의 해석에 있어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터 많은 정치자금을 모금한 후보자에게 보다 빈번히 그리고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예측도 가능하다. 후보자가 선거 기간 동안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은 정치 자금모금이다.<sup>15</sup> 따라서 후보자가 많은 정치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특히 일반 개인으로부터 많은 정치자금을 모금할 경우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정치자금 모금에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유권자에게 퍼져있는 이익집단의 정치자금과 정책결정간의 부정적 인식은 충분한 정치자금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로 하여금 이익집단과 거리를 두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개인 기부금”은 후보자가 일반 개인으로부터 모금한 정치자금을 의미하며, 이는 총 기부금에서 이익집단 기부금을 제외한 기부금이다.<sup>16</sup> 그러나 “개인 기부금” 변수는 분석되는 모델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기부횟수를 분석하는 방정식의 경우 “개인 기부금” 변수는 개인 기부횟수를 의미하며, 기부금액을 분석하는 방정식의 경우 개인 기부금액을 의미한다. 개인 기부금 데이터는 “주 정치 정치자금에 관한 국가연구소”에서 수집되었다.

조성대의 연구(2000)에서 지적되었듯이, 이익집단의 정치자금 기부는 투자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익집단은 자신의 기부금이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올 시점 또는 대상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조성대, 2000; Stratmann, 1998). 본 연구는 세 가지 변수를 사용하여, 주 의회 선거에서 이익집단의 정치자금 기부가 “투자”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첫 번째 변수는 후보자 경쟁이다(Fuchs, Adler and Mitchell, 200; Stratmann and Aparicio-Castillo, 2001). 후보자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후보자들은 더욱 많은 정치자금이 필요할 것이며, 따라서 이익집단이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기부금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후보

15. 전 국회의원인 윌리엄 구드링(William Goodling, Republican of Pennsylvania)과 제임스 로이드(James Lloyd, Democrat of California)와의 2005년 10월 11일 인터뷰.

16. 총 기부금은 후보자 자신의 기부금, 정당 기부금을 제외하고 후보자가 받은 기부금의 총 기부횟수와 기부금액이다.

자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익집단은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증대할 것이다. 후보자간 경쟁은 두 정당 후보자간의 득표율의 절대적 차이로서 측정되었다. 따라서 후보자간의 투표율 차이가 적어질수록, 즉 후보자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정치자금 기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계수의 방향은 음성(-)으로서 반비례적 관계로 예상된다. 후보자 득표율 데이터는 주 정부 선거관련 사이트로부터 모금하였다.

이익집단의 정치자금 기부가 “투자”인지를 측정하는 또 다른 변수들은 주별 정당지지와 통합정부(unified government) 여부이다. 만약에 기부자가 투자자일 경우, 그들은 정당의 지지도가 높은 곳에 투자할 것이다. 또한 후보자의 정당이 주지사의 정당과 같고, 주 의회 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라면, “투자자”인 이익집단은 이와 같은 후보에게 기부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주별 정당지지도”는 가장 최근에 치뤄진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특정 주에서 취득한 득표율의 절대적 차이로서 측정되어졌다. “통합정부 여부”는 주의원 후보가 주지사과 같은 정당 출신이고 그 정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일 경우 “1”, 상대편 후보의 정당 출신이 주지사이고,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라면 “-1”로 코드하였다. 끝으로 어느 당도 주지사, 상·하원 모두를 점령하고 있지 못하면 “0”으로 처리하였다. 예상되는 계수의 방향은 두 변수 모두 양성(+)으로서 정비례 관계이다. 주별 정당지지도와 통합정부 여부에 관한 데이터는 “미국 통계연계연감”(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에서 모금하였다.

칼시, 니미, 그리고 파울(Carsey, Niemi and Powell, 2000)은 의회 전문화 수준이 현직자의 재선확률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의회 전문화 수준이 높으면 현직자가 관여할 수 있는 정책영역이 넓어지며, 이는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증대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구 구민에게 베풀 수 있는 정책적 혜택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이를 홍보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증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연구는 본 연구에 또한 함의하는 바가 크다. 의회 전문화가 높을수록 현직자가 관여하는 정책영역이 넓어지며, 이는 현직자가 이익집단의 이익에 관여하는 정책영역이 넓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회 전문화가 높은 주일수록 이익집단의 기부금이 증대될 가

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 “의회 전문화” 변수는 칼시, 니미, 그리고 파울 (Carsey, Niemi, and Powell, 2000)과 몬크리프(Moncrief, 1988)가 사용한 측정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들의 측정방식은 의회 회기, 의원봉급, 그리고 참모진을 포함한 의원활동 보조를 종합변수로 통합한 지표이다. 예상되는 계수의 방향은 두 변수 모두 양성(+)이다. 의회 회기와 의원봉급은 “주별 책자”(The Book of the States)에서, 의원활동 보조는 “주정부 재정”(State Government Finances)에서 모금하였다.

끝으로 정당 변수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기부금 차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정당” 변수는 후보자의 정당이 민주당일 경우에 0, 후보자의 정당이 공화당일 경우에 1로 처리하였다. 관련 분석자료는 “주 정치 정치자금에 관한 국가연구소”에서 수집되었다.

주들간의 독특한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인구통계 변수가 사용되어졌다. 분석에 사용된 인구통계변수는 주 인구와 주별 가변수이다(Gross and Goidel, 2003). 주 인구가 많을수록 후보자가 호소할 수 있는 기부 대상자들이 많아짐을 의미하며, 잠재적 기부자의 증대는 기부횟수와 기부금액의 증대를 예측케 한다. 본 논문에서 “인구수” 변수는 주당 인구수이다. 또한 주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주별 가변수가 삽입되었다. 주 인구수는 “미국 통계연계연감”에서 모집하였다.

## 2. 통계적 모델

본 논문은 기부금 제한법이 이익집단의 기부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익집단의 기부행태는 두 가지 종속변수, 기부횟수와 기부금액으로서 측정되었다.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통계적 모델을 구성할 때 유의할 점은 종속변수가 어떠한 형성과정(data generating process)을 통하여 구현되는가에 있다. 통계적 모델은 데이터 형성 과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King, 1998). 본 논문의 종속변수인 기부횟수와 기부금액은 서로 다른 형성과정을 통해 구현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통

계적 모델을 구축할 때 상이한 데이터 형성과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부횟수 변수는 후보자에게 기부한 이익집단의 총 기부횟수이다. 따라서 기부횟수는 “0” 미만의 값을 가질 수 없으며, 기부횟수를 위한 통계모델을 구축할 때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후보자가 다수의 이익집단 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있으면, 이는 해당 후보자가 높은 당선율을 가지고 있음을 다른 이익집단에게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익집단들은 당선율이 높은 이 후보자에게 더욱 자주 기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익집단의 정치자금 기부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sup>17</sup> 음이항 모델(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유의사항을 염두에 둔 통계모델이다.

반면 기부금액 변수는 후보자에게 기부한 이익집단 기부금액의 총합이다. 기부금액 함수는 두 가지 함수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함수는 이익집단이 후보자에게 기부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함수이다. 두 번째 함수는 기부결정이 내려진 후 해당 후보자에게 얼마를 기부할 것인지에 관련된 함수이다. 두 가지 함수를 동시에 고려되어 측정되는 통계모델로서 토빗모델(Tobit model)이 제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계모델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재정리할 수 있다. 기부횟수를 측정하기 위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Pr(y_{ijt}) = \frac{\text{Exp}(\prod l_{ijt}) \prod l_{ijt}^{y_{ijt}}}{y_{ijt}!} \quad [\text{공식 1}]$$

종속변수  $y$ 는 음이항 분포를 따르며, 기부횟수를 일컫는다. 기부횟수 비율( $l_{ijt}$ )은  $(x_{ijt}b + e_{ijt})$ 의 지수함수, 즉  $l_{ijt} = \text{Exponential}(x_{ijt}b + e_{ijt})$ 이다. 독립변수인 “ $x$ ”는 기부금 제한법, 기부금 제한법\*현직자, 기부금 제한법\*도전자,

17. 정치자금 기부횟수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을 경우 잔차는 과분포(overdispersion)가 되며, 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다(Long, 1997). 표 1, 2, 3, 그리고 4에서 나타나듯이 기부횟수에 대한 과분포 검증치는 정치자금의 기부횟수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음이항 모델이 기부횟수를 측정하는 적절한 통계모델임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개인 기부금, 도전자, 현직자, 정당, 후보자간 경쟁, 주별 정당지지도, 통합정부 여부, 의회 전문화, 선거인구, 주별 가변수를 일컫는다. 주별 가변수  $\sum_{i=1}^{34} \beta_i SD_i$  는  $SD_1 =$  알래스카,  $SD_2 =$  알칸소,  $SD_3 =$  캘리포니아,  $SD_4 =$  콜로라도,  $SD_5 =$  코네티컷,  $SD_6 =$  델라웨어,  $SD_7 =$  플로리다,  $SD_8 =$  조지아,  $SD_9 =$  하와이,  $SD_{10} =$  아이오와,  $SD_{11} =$  일리노이,  $SD_{12} =$  인디애나,  $SD_{13} =$  캔사스,  $SD_{14} =$  켄터키,  $SD_{15} =$  메인,  $SD_{16} =$  미시건,  $SD_{17} =$  미네소타,  $SD_{18} =$  몬테나,  $SD_{19} =$  뉴멕시코,  $SD_{20} =$  네바다,  $SD_{21} =$  뉴욕,  $SD_{22} =$  오크하이오,  $SD_{23} =$  오크라호마,  $SD_{24} =$  오레곤,  $SD_{25} =$  펜실베니아,  $SD_{26} =$  로드 아일랜드,  $SD_{27} =$  사우스 캐롤라이나,  $SD_{28} =$  테네시,  $SD_{29} =$  텍사스,  $SD_{30} =$  유타,  $SD_{31} =$  버지니아,  $SD_{32} =$  워싱턴,  $SD_{33} =$  윈스칸신, 그리고  $SD_{34} =$  와이오밍이다. 알래스카는 기준변수로 사용되었다.  $e$ 는 교란요인(disturbance term)이다. “ $i$ ”는 주, “ $j$ ”는 선거구, 그리고 “ $t$ ”는 선거연도를 일컫는다. 측정 방식은 최대우도비(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법이다.

기부금액을 측정하기 위한 함수는 다음과 같다.

$$y_{ijt} = \begin{cases} y_{ijt}^* = x_{ijt} \beta + \sum_{i=1}^{34} \beta_i SD_i + \epsilon_{ijt} & \text{if } y_{ijt}^* > 0 \\ 0 & \text{if } y_{ijt}^* \leq 0 \end{cases} \quad [\text{공식 2}]$$

종속변수  $y$ 는 기부금액이다. 기부결정함수( $t$ )는 프로빗 확률분포를 따르며, 기부금액의 확률분포( $y^*$ )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독립변수는 공식 1과 같다. 측정 방식은 최대우도비 방법이다.

다음 장에서는 본 장에서 제시된 방법론을 통하여 기부금 제한법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IV. 경험적 결과

본 논문은 정치 기부금 제한법이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가설 1과 2). 또한 기부금 제한법의 의도치 않은 결과, 즉 기부금 제한법으로 인하여 현직자 우위의 기부경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가설 3과 4). 본 장에서는 먼저 기부금 제한법이 전체 이익집단의 정치기부금에 대해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어 기업과 노동조합에 대한 개별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표 1>은 기부금 제한법이 이익집단의 기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sup>18</sup> 모델 1은 기부금 제한법의 “전체적인 효과”를 분석한 모델이다. 따라서 모델 1의 “기부금 제한법” 변수는 제한법의 총체적 효과를 나타낸다. 반면 모델 2는 기부금 제한법이 후보자 유형에 따라 “차별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델이다. 따라서 후보자 유형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교차변수(interactive term)가 모델 2에 삽입되었다. 현직자에 미치는 기부금 제한법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부금 제한법\*현직자” 변수가, 도전자에 미치는 기부금 제한법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부금 제한법\*도전자” 변수가, 그리고 공석후보에 미치는 기부금 제한법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부금 제한법” 변수가 삽입되었다.<sup>19</sup>

<표 1>의 모델 1에서 볼 수 있듯이, 기부금 제한법은 전체적으로 이익집

18. 주별 가변수에 대한 통계치는 논문 페이지 수의 제한상 <표 1>에서 제외하였다. 관련 자료는 저자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 기부횟수의 과분포 수치는 모델 1의 경우 계수 0.963이었고 표준오차 0.022이고, 모델 2의 경우 계수 0.963이었고 표준오차는 0.002였다.

19. 모델 2의 경우, 기부금 제한법이 전체적으로 후보자의 자금 모금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결합 테스트(joint test)를 통하여 검증할 수 있다(Gujarati, 2003).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측정방식이 최대우도비이기 때문에 이용되는 결합 테스트(joint test)로서 월드 테스트(Wald test)가 사용되었다. <표 1> 모델 2의 기부금 제한법을 결합적으로 테스트한 결과, 기부금 제한법은 결합적으로 기부횟수와 기부금액 모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부횟수의 경우  $p = 0.075$ , 기부금액의 경우  $p = 0.001$ ).

단의 기부횟수와 기부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 제한법 변수는 기부횟수에 있어서 -0.051의 계수를, 그리고 기부금액(단위 1,000)에 있어서 -1.685의 계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계수들은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다 현실적으로 계수의 의미를 해석하면, 기부금 제한법이 강화될 경우 이익집단의 기부횟수는 5회 감소하고, 기부금액은 1,685달러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0</sup>

반면 <표 1>의 모델 2에서 나타나듯이, 기부금 제한법은 현직자 우위의 기부경향을 강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1</sup> 즉 공석후보와 비교하여 기부금 제한법은 현직자와 도전자가 모금하는 기부횟수에 유사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직자의 경우 -0.020, 도전자의 경우 0.009). 또한 <표 1> 하단에 있듯이 기부금 제한법은 현직자와 도전자가 모금하는 기부횟수에 차별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계수 -0.029, 표준오차 0.024).

기부금 제한법이 현직자 우위의 기부 경향을 강조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이익단체의 기부금액 분석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지 않았다. 기부금 제한

- 
20. 음이항모델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기울기 계수가 한계효과(marginal effect)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Long, 1997: 224-225, 237). 음이항 모델에서의 한계효과는 (기울기 계수)\*(독립변수의 수준이 고려된 상태에서 평균 기부횟수)를 일컫는다. 이는  $\frac{\partial E(y|x)}{\partial x_k} = E(y|x) \beta_k$  (k는 분석하고자 하는 독립변수)로 공식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부금 제한법이 기부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기부금 제한법의 전체적인 효과를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기부금 제한법의 총효과 = 기부금 제한법이 가장 강한 경우 (기부금 제한법 = 3)의 기부횟수 - 기부금 제한법이 가장 느슨한 경우 (기부금 제한법 = 0)의 기부횟수. <표 1>의 경우 기부금 제한법이 가장 느슨한 경우의 기부횟수는 평균 35회이며 기부금 제한법이 가장 강한 경우의 기부횟수는 평균 30이었다. 따라서 기부금 제한법은 전체적으로 이익집단의 기부횟수를 평균 5회 정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에서의 기부횟수 분석에서도 같은 방법이 사용됐다. 반면 기부금 제한법이 기부금액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부금 제한법이 한 단계 증가했을 때의 영향력이다. 즉 (기부금 제한법 = 1)에서 (기부금 제한법 = 2)로 강화될 경우, 기부금액에 미치는 영향력은 -1,685이다. 이하의 해석에서도 같은 방법이 사용되었다.
21. 모델 2의 “기부금 제한법” 변수들은 공석후보에 대한 기부금 제한법의 효과를 기준으로 현직자에 대한 기부금 제한법의 효과(기부금 제한법\*현직자)와 도전자에 대한 기부금 제한법의 효과(기부금 제한법\*도전자)를 각각 분석한 결과이다. 따라서 기부금 제한법이 현직자와 도전자에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제한법\*현직자” 변수와 “기부금 제한법\*도전자” 변수 간의 차이와 이에 관련된 표준오차를 구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계산방식은 엄기홍(2004)을 참고.

&lt;표 1&gt; 기부금 제한법과 이익집단 기부금

	기부횟수		기부금액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기부금 제한법	-0.051** (0.024)	-0.046 (0.029)	-1.685*** (0.552)	-0.995 (0.874)
기부금 제한법* 현직자		-0.020 (0.021)	-2.308* (1.347)	
기부금 제한법* 도전자		0.009 (0.027)	0.318 (0.799)	
개인 기부금	0.006*** (0.000)	0.006*** (0.000)	0.477*** (0.060)	0.477*** (0.060)
도전자	-0.892*** (0.035)	-0.912*** (0.067)	-2.759 (2.558)	-3.469 (3.033)
현직자	0.869*** (0.028)	0.912*** (0.051)	23.838*** (1.591)	28.950*** (3.268)
정당(민주당 → 공화당)	-0.071** (0.029)	-0.073** (0.029)	-7.035*** (1.485)	-7.160*** (1.474)
후보자간 경쟁	-0.012*** (0.001)	-0.012*** (0.001)	0.180** (0.091)	0.181** (0.091)
주별 정당지지도	0.007*** (0.002)	0.007*** (0.002)	0.028 (0.059)	0.031 (0.058)
통합정부 여부	0.083*** (0.024)	0.084*** (0.024)	3.632** (1.618)	3.673** (1.614)
의회 전문화	-0.002 (0.004)	-0.002 (0.004)	0.663** (0.296)	0.648** (0.296)
인구수	0.135* (0.082)	0.135 (0.082)	28.535*** (7.302)	28.896*** (7.283)
절면	4.119*** (0.152)	4.105*** (0.157)	-27.385** (12.314)	-29.128** (12.261)
N	7714	7714	7714	7714
Log likelihood	-208.491	-208.486	-212.729	-212.707
Wald Chi <sup>2</sup>	9804.83***	10009.85	5143.26***	5269.29
현직자-도전자 기부금 제한법*현직자 - 기부금 제한법*도전자	1.760*** (0.031)	1.824*** (0.058)	26.598 (3.706)	32.418*** (4.231)
		-0.029 (0.024)		-0.073 (0.039)

알래스카 주와 1999년은 기준변수로서 사용되었음.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 < .10; \*\* p < .05; \*\*\* p < .01

법은 공석후보와 도전자간(계수 0.318, 표준오차 0.799)에 있어, 그리고 현직자와 도전자간(계수 -0.073, 표준오차 0.039)에 있어 차별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부금 제한법의 차별적 효과는 공석

후보와 현직자간에 나타났지만, 기존의 주장과는 달리 기부금 제한법은 공석 후보와 비교하여 현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계수 -2.308, 표준오차 1.347). 이와 같은 결과는 기부금 제한법이 현직자 우위의 기부경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재고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통제된 대다수의 변수 또한 통계적 유의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2</sup> 예를 들어 후보자 유형에 따라 이익집단의 기부행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자와 도전자의 기부횟수 차이는 약 62회(기울기 계수 1.760)로 나타났으며,<sup>23</sup> 기부금액은 약 27,0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직자와 공석후보 간의 비교에 있어서도 기부횟수와 기부금액 모두 현직자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도전자와 공석후보간의 비교에서는 기부횟수에서만 공석후보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들(예를 들어 후보자간 경쟁)이 통제된 상황에서 공석후보와 도전자간의 기부금액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가 지니고 있는 정치자금, 특히 개인으로부터의 정치자금액은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지표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가 개인 기부금을 많이 모금할 경우 이익집단은 더욱 자주 기부하며 더욱 많은 기부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후보자가 모금한 개인 기부금이 1,000달러 증가할 경우 이익집단이 기부하는 금액은 약 500달러 증가(기울기 계수 0.47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단체 기부금 모금에 있어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서 기부횟수와 기부금액 두 측면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었다. 공화당은 민주당에 비하여 평균 2회 낮은 기부횟수를 나타내고 있으며,<sup>24</sup> 7,000달러 정도 낮은 기부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방차원의 선거에서 공화당이 보다 많은 기부자 수와 기부금액을 받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흥미로운 발견이라 할 수 있다.

후보자간 경쟁 또한 기부횟수와 기부금액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

22. 이하의 분석에서는 모델 1과 모델 2가 유사한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자유도가 높은 모델 1의 결과에 기준하여 해석하겠다.

23. 기부횟수에 대한 계산은 각주 20을 참고.

24. 기부횟수에 대한 계산은 각주 20을 참고.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기부횟수와 기부금액에 있는 후보자 간 경쟁변수의 계수가 서로 다른 방향이라는 것이다(-0.012와 0.180). 이는 후보자간 경쟁이 치열한 선거일수록 기부횟수는 증가하는 한편, 기부금액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이것은 아래 <표 3>의 “도전자 기부금” 변수에서도 보여지듯이, 이익집단이 전략적인 분배전략을 선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익집단이 선거에 있어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할 것을 예상할 경우, 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액의 기부금을 두 후보 모두에게 나누어 자주 기부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듯하다.

후보자 간 경쟁을 포함해서 주별 정당지지도와 통합정부 여부 변수는 이익집단 기부가 “투자” 성향을 지니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데 이용된 지표이다. <표 1>의 모델 1에서 나타나듯이 주별 정당지지도와 통합정부 여부 변수 모두는 이익집단의 기부와 일정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별 정당지지도는 이익집단의 기부횟수에, 통합정부 여부는 기부횟수, 기부금액 모두에 있어서 이익집단의 기부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별 정당지지도가 높을수록, 정부가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통합될수록 이익집단은 더욱 자주, 그리고 더욱 큰 금액의 기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칼시, 니미, 그리고 파울(Carsey, Niemi and Powell, 2000)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의회 전문화는 이익집단의 기부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회가 전문화될수록 주의회 의원이 관여할 수 있는 정책범위가 넓어지며, 이는 결국 이익집단이 보다 많은 금액을 후보자에게 기부할 동기를 부여하는 듯하다.

끝으로 각 주의 독특한 차이를 통제하기 위한 주 인구 변수와 주 가변수 또한 대체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스과 고이들(Gross and Goidel, 2003)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의 정치기부금은 후보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호소할 수 있는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정치기부금의 행태는 주별로 독특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현재까지의 분석은 기부금 제한법과 이익집단 전체 기부금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표 1>에 나타났듯이 기부금 제한법은 기부횟수, 기부금액

모두에 있어서 이익집단의 기부금을 감소시키고 있다. 선거에서의 이익집단 영향력을 기부횟수와 기부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기부금 제한법으로 인하여 이익집단의 기부횟수와 기부금액이 감소하는 것은 기부금 제한법이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기부금 제한법의 규제적 효과는 현직자 우위의 기부경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동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부금 제한법이 법 자체가 의도한 바와 같이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정치자금에서의 정치적 평등 달성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지는 일련의 분석에서는 이익집단을 세분화하여, 정치 기부금 제한법과 기업의 기부행위 그리고 정치 기부금 제한법과 노동조합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고찰해 보겠다.

본 논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익집단은 기업과 노동조합으로 세분화된다. 기존 문헌 검토에서 보여지듯이 이들은 동일한 목적 하에서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rton and Cameron, 199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조합은 민주당 후보를 편애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성향은 기업과 노동조합이 같은 이익집단의 범주 안에 있을지라도 기부금 제한법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은 기부금 제한법이 기업과 노동조합 각각에 규제적 효과를 지니는지를 검증하는 것과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기부금 제한법의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기업 기부금을 분석하는 방정식에서 종속변수인 기부횟수/기부금액 변수와 주요 독립변수인 기부금 제한법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종속변수인 기업의 기부금은 자금 출처가 기업 또는 기업 관련 정치활동위원회로부터 후보자에게 기부된 자금을 일컫는다. 기업에 관한 “기부금 제한법” 변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코딩되었다. 먼저 기업 또는 기업 관련 정치활동위원회의 기부 가능 금액에 제한이 없을 경우 0으로 제한이 있을 경우에 1로 처리한 후, 각 제한액에 대한 가변수를 합산하였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기부금 제한법 변수는 0(무제한)에서 2(기업과 기업 관련 정치활동위원회 모두에 있

어서 기부금 제한액이 있을 경우)로 변화한다.

노동조합 기부금을 분석하는 방정식에서 또한 유사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종속변수인 노동조합의 기부금은 자금 출처가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관련 정치활동위원회로부터 후보자에게 기부된 자금을 일컫는다. 노동조합의 “기부금 제한법” 변수는 기업의 기부금 제한법 변수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관련 정치활동위원회에 대한 제한법을 가변수 처리한 후 합산하였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대한 기부금 제한법 변수는 0(무제한)에서 2(노동조합과 노동조합 관련 정치활동위원회 모두에 있어서 기부금 제한액이 있을 경우)로 변화한다. 그 외에 사용된 통제변수 변수들은 <표 1>의 분석에서 사용된 방법과 같다.

<표 2>는 기부금 제한법이 기업과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sup>25</sup> <표 1>의 모델 1에 나타나듯이, 기부금 제한법은 기업의 기부횟수와 기부금액 모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 제한법의 계수는 기부횟수 분석에 있어서 -0.066, 그리고 기부금액 분석에 있어서 -2.246이었다. 이를 보다 현실적으로 해석하면, 기부금 제한법이 강화될 경우 기부횟수는 약 3회 감소하며,<sup>26</sup> 기부금액은 2,835달러 감소한다.<sup>27</sup> 이와 같은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부금 제한법이 노동조합의 기부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 제한법의 기울기 계수(-0.066과 -0.153) 모두 예상된 음수를 가리키고 있으나 통계적 신뢰성을 획득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지사 선거에 관한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엄기홍, 2004) 기부금 제한법이 기업과 노동조합에 따라 차별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25. 논문의 페이지 제약상 주별 가변수는 <표 2>에서 생략되었다. 관련 내용은 저자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 기부횟수에 관한 과분포 계수는 다음과 같다. 기업 기부금 경우 모델 1의 과분포 계수는 1.074이며 표준오차는 0.025이고, 모델 2의 과분포 계수는 1.073이며 표준오차는 0.025이다. 노동조합 기부금 경우 모델 1의 과분포 계수는 1.126이며 표준오차는 0.038이고, 모델 2의 과분포 계수는 1.124이며 표준오차는 0.038이다.

26. 기부횟수에 대한 계산은 각주 20을 참고.

27. 기부금 제한법의 기부횟수에 대한 영향력 계산은 주 20을 참고.

<표 2> 기부금 제한법과 기업 그리고 노동조합 기부금

	기업				노동조합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횟수		기부금액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기부금 제한법	-0.066* (0.039)	-0.053 (0.046)	-2.426*** (0.762)	-1.187 (1.197)	-0.066 (0.054)	-0.034 (0.068)	-0.153 (0.510)	-0.289 (0.692)
기부금 제한법* 현직자		-0.053 (0.033)		-3.282* (1.876)		-0.081* (0.049)		-0.172 (0.799)
기부금 제한법* 도전자		0.020 (0.044)		-0.324 (1.155)		0.005 (0.056)		0.73 (0.683)
개인 기부금	0.006*** (0.000)	0.006*** (0.000)	0.377*** (0.053)	0.377*** (0.053)	0.004*** (0.000)	0.004*** (0.000)	0.107*** (0.015)	0.107*** (0.015)
도전자	-0.950*** (0.038)	-0.978*** (0.073)	-4.918** (2.390)	-4.446 (2.829)	-0.730*** (0.048)	-0.738*** (0.091)	-5.529*** (0.888)	-6.566*** (1.223)
현직자	0.921*** (0.030)	0.996*** (0.055)	23.463*** (1.546)	28.187*** (3.088)	0.820*** (0.044)	0.933*** (0.081)	6.522*** (0.805)	6.769*** (1.212)
정당(민주당 → 공화당)	0.207*** (0.031)	0.204*** (0.031)	5.443*** (1.339)	5.337*** (1.332)	-2.078*** (0.042)	-2.080*** (0.042)	-24.857*** (1.579)	-24.870*** (1.576)
후보기간 경쟁	-0.011*** (0.001)	-0.011*** (0.001)	0.121 (0.081)	0.121 (0.081)	-0.010*** (0.001)	-0.010*** (0.001)	-0.027 (0.028)	-0.027 (0.028)
주별 정당지지도	0.006*** (0.002)	0.006*** (0.002)	-0.084 (0.054)	-0.080 (0.054)	-0.007** (0.003)	-0.007** (0.003)	0.067** (0.030)	0.067** (0.030)
통합정부 여부	0.113*** (0.026)	0.113*** (0.026)	1.377 (1.481)	1.418 (1.478)	0.008 (0.034)	0.006 (0.034)	3.376*** (0.721)	3.372*** (0.719)
의회 전문화	-0.001 (0.005)	-0.001 (0.005)	0.744*** (0.264)	0.727*** (0.264)	0.002 (0.006)	0.002 (0.006)	-0.090 (0.112)	-0.089 (0.112)
인구수	0.139 (0.087)	0.140 (0.088)	28.920*** (6.075)	29.318*** (6.086)	-0.118 (0.116)	-0.109 (0.117)	1.320 (2.621)	1.276 (2.624)
절면	3.863*** (0.162)	3.835*** (0.168)	-28.085*** (10.136)	-30.149*** (10.233)	3.424*** (0.259)	3.377*** (0.265)	4.282 (4.092)	4.494 (4.157)
N	7714	7714	7714	7714	7714	7714	7714	7714
Log likelihood	-200.818	-200.805	-204.694	-204.676	-108.212	-103.196	-121.443	-121.438
Wald Chi <sup>2</sup>	8884.97***	9088.260	3527.42***	3593.110	8015.89***	8074.010	870.95***	872.020
현직자-도전자 기부금 제한법*현직자 - 기부금 제한법* 도전자	1.870*** (0.034)	1.974*** (0.063)	28.381*** (2.828)	32.634*** (3.798)	1.551*** (0.042)	1.671*** (0.078)	12.051*** (1.008)	13.335*** (1.212)
		-0.073* (0.40)		-2.958* (1.522)		-0.086* (0.049)		-0.915 (0.705)

알래스카 주와 1999년은 기준변수로서 사용되었음.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 < .10; \*\* p < .05; \*\*\* p < .01



<표 2> 모델 2는 기부금 제한법이 현직자 우위의 기부경향을 강화시키는 지를 기업과 노동조합 기부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sup>28</sup> 모델 2에서 볼 수 있듯이, 기부금 제한법은 현직자와 도전자에게 차별적 영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부금 제한법의 차별적 효과는 대체적으로 현직자 중심의 기부경향을 강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제한법은 기부횟수, 기부금액 모든 면에서 현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기부횟수의 경우 -0.073 그리고 기부금액의 경우 -2.598). 또한 노동조합 기부금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부금 제한법은 기부횟수 면에서 현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으며(기부횟수의 경우 -0.086), 기부금액에 있어서는 차별적 효과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통제변수는 전체 이익집단의 기부금 분석에서 보여졌던 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9</sup> 예를 들어 개인들로부터 모금된 정치자금이 많을수록 많은 기업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다수의 거액 기부금을 모금하였고, 후보자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그리고 주의 정당 지지도가 높을수록 우세한 정당의 후보자는 많은 수의 기부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몇 가지 통제변수는 이익집단에 끼치는 영향과 비교할 때, 기업과 노동조합 기부금에 상이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민주당 후보자와 비교할 때 공화당 후보자는 전체 이익집단으로부터 소수의 기부횟수와 소액의 기부금액을 받는 반면, 기업으로부터는 다수의 기부횟수와 다액의 기부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들(예를 들어 후보자 유형)이 통제되었을 때, 기업은 공화당 후보를 선호하는 반면, 노동조합은 민주당 후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 기부금 제한법을 결합적으로 테스트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 기부금 분석의 경우 기부금 제한법은 결합적으로 기부횟수와 기부금액 모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부횟수의 경우  $p = 0.035$ , 기부금액의 경우  $p = 0.003$ ). 반면에 노동조합 기부금 분석의 경우 기부금 제한법은 결합적으로 단지 기부횟수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뿐, 기부금액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끼치고 있지 못했다(기부횟수의 경우  $p = 0.085$ , 기부금액의 경우  $p = 0.523$ ).

29. 모델 1의 결과와 모델 2의 결과가 유사하기 때문에, <표 1>과 마찬가지로 <표 2>에 있어서도 모델 1의 결과를 중심으로 해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기업과 노동조합의 기부행태를 비교할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각자 선호하는 정당에게 기부하는 기부금액의 차이이다. 물론 다른 샘플에서 유추된 기울기 계수를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기업은 후보가 공화당 후보일 경우 5,443달러(기울기 계수  $5.433 \times 1,000$ 달러)를 더 지불하는 반면 노동조합은 후보가 민주당 소속일 경우 24,857달러(기울기 계수  $-24.857 \times 1,000$ 달러)를 더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예산이 기업의 예산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기부경향은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배분전략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다.

후보자 간 경쟁 변수가 기부횟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전체 이익집단, 기업, 그리고 노동조합 모두에 있어서 동일한 효과를 지니고 있었으나, 기부금액에 있어서는 상이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기업, 노동조합 모두는 후보자에 대한 기부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업의 경우  $-0.011$ , 노동조합의 경우  $-0.010$ ). 그러나 전체 이익집단의 경우와는 달리, 후보자간 경쟁 변수는 기업과 노동조합의 기부금액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업의 경우  $0.121$ , 노동조합의 경우  $-0.027$ ). 이와 같은 결과는 <표 1>의 해석과 같이 후보자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즉 어느 후보가 당선될지가 불확실해질수록, 기업과 노동조합은 두 후보 모두에게 정치자금을 보다 자주 기부하는 듯하다. 단지 <표 1>과 차이가 있는 점은 후보자간 경쟁이 치열할 경우 이들이 기부금액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익집단 기부금이 기업과 노동조합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결과는 보다 많은 의문을 자아낸다.

현재까지는 기부금 제한법이 전체 이익집단, 기업,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주지사 선거를 대상으로 한 분석(엄기홍, 2004)에서와 같이 주 의회에서도 기부금 제한법이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의도된 효과는 의도되지 않는 효과, 즉 현직자 우위의 기부경향을 강화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부금 제한법은 기업과 노동조합 기부행위에 있어서 현직자 우위의 기부경향을 감소시키는 기제로서 역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

여주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혹자가 의문시할 수 있는 질문은 기부금 제한법이 왜 현직자 우위의 기부경향을 강화시키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기부금 제한법이 현직자와 도전자에게 모두에게 동일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현직자에게만 또는 도전자에게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직자만을 대상으로 그리고 도전자만을 대상으로 기부금 제한법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와 조작화는 <표 1>과 <표 2>와 같다.<sup>30</sup> 단지 현직자 또는 도전자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후보자 유형 변수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후보자의 기부금은 상대편 후보자의 기부금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편 후보자의 기부금 변수가 새로이 추가되었다.<sup>31</sup> 끝으로 현직자 또는 도전자만의 기부금을 분석하기 때문에 공석 선거구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sup>32</sup>

아래 <표 3>은 기부금 제한법의 효과를 현직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sup>33</sup> <표 4>는 기부금 제한법의 효과를 도전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0. 논문의 페이지 제약상 주별 가변수에 대한 계수는 표3과 4에서 생략되었다. 관련 내용은 저자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
31. 함수에 따라 “도전자 기부금”/“현직자 기부금” 변수의 내용이 달라진다. 기부횟수 함수의 경우 “도전자 기부금”/“현직자 기부금” 변수의 내용은 도전자/현직자 기부횟수가 되는 반면, 기부금액 함수의 경우에는 기부금액이 변수의 내용이 된다. <표 3>과 <표 4>에서는 방정식 단순화를 위하여 도전자 기부횟수 변수와 기부금액 변수를 총칭하여 “도전자 기부금”으로 명하였고, 현직자 기부횟수 변수와 기부금액 변수를 총칭하여 “현직자 기부금”으로 명하였다.
32. <표 3>과 <표 4>의 결과는 <표 1>과 <표 2>의 결과와 비교하여 다소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표 1>, <표 2>와 비교했을 때 <표 3>과 <표 4>에는 새로운 변수가 삽입되었고 일부 변수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표 3>과 <표 4>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는 <표 1>과 <표 2>의 6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공석후보자(7,714개의 샘플 중 4,990가 공석후보자)를 분석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표 3>과 <표 4>의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추는 현직자가 재선을 추구하는 선거구에 한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3. 주별 가변수에 대한 통계치는 논문 페이지 수의 제한상 <표 3>에서 제외하였다. 관련 자료는 저자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 현직자만을 대상으로 분석에 있어서의 과분포 계수는 다음과 같다. 기부횟수에 관한 과분포 계수는 이익집단의 경우 0.343이며 표준오차는 0.018이다. 기업 기부금 분석의 경우 과분포 계수는 0.380이며 표준오차는 0.019이다. 끝으로 노동조합 기부금 분석의 경우 과분포 계수는 0.474이며 표준

이다.<sup>34</sup> <표 3>을 보면, 박스-스토펜지마이어와 다우(Box-Steffensmeier and Dow 1992)의 주장과는 달리 기부금 제한법이 현직자에 대한 기부횟수기부금액 모두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기부금 제한법이 강화될 경우 전체 이익집단은 기부횟수에 있어서 18회 정도, 기부금액에 있어서 2,344달러 정도 작게 현직자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5</sup> 기업의 기부금 또한 기부횟수의 경우 14회 정도, 기부금액의 경우 2,986달러 정도 감소되었다. 끝으로 노동조합의 경우 감소분은 기부횟수에 있어서 2회 정도, 기부금액에 있어서 2,345달러이다.

반면에 도전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표 4>를 보면, 기부금 제한법은 이익집단 전체와 기업의 “기부금액”만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부금 제한법이 강한 주의 경우 이익집단과 기업은 도전자에 대한 기부는 유지하되, 해당 금액만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부금 제한법이 현직자, 도전자 모두의 기부금액에 있어 규제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계수의 크기를 고려해 볼 때 제한법은 최소한 도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이익집단, 기업, 그리고 노동조합 순으로 기부금 제한법 변수의 계수는 현직자의 경우 -2.344, -2.986, 그리고 -2.345; 도전자의 경우 -0.696, -1.514, 그리고 0.899). 물론 다른 샘플로부터의 통계적 유추라는 한계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기부금 제한법이 현직자 우위의 기부경향을 강화시킨다 라는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서 평가할 수 있다.

대다수의 통제변수는 현직자와 도전자에 대하여 다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도전자 기부금은 모든 형태의 이익단체에 있어서 현직자에게 기부되는 정치자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현직

---

오차는 0.028이다.

34. 주별 가변수에 대한 통계치는 논문 페이지 수의 제한상 <표 3>에서 제외하였다. 관련 자료는 저자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 도전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있어서의 과분포 계수는 다음과 같다. 기부횟수에 관한 과분포 계수는 이익집단의 경우 1.207이며 표준오차는 0.052이다. 기업 기부금 분석의 경우 과분포 계수는 1.378이며 표준오차는 0.060이다. 끝으로 노동조합 기부금 분석의 경우 과분포 계수는 1.170이며 표준오차는 0.089이다.

35. 기부금 제한법의 기부횟수에 대한 영향력 계산은 주 20을 참고.

〈표 3〉 기부금 제한법과 기부금: 현직자만을 대상으로

	전체 이익집단		기업		노동조합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금 제한법	-0.074*** (0.021)	-2.344*** (0.740)	-0.104*** (0.032)	-2.986*** (1.124)	-0.130** (0.054)	-2.345*** (0.681)
도전자 기부금	0.000 (0.000)	-0.627*** (0.211)	0.000 (0.000)	-0.861*** (0.294)	-0.013*** (0.005)	-0.311*** (0.069)
개인 기부금	0.003*** (0.000)	0.544*** (0.103)	0.003*** (0.000)	0.416*** (0.098)	0.003*** (0.000)	0.114*** (0.023)
정당 (민주당 → 공화당)	0.086*** (0.029)	-0.195 (2.190)	0.247*** (0.031)	9.011*** (2.749)	-1.398*** (0.056)	-19.962*** (1.904)
후보자간 경쟁	-0.000 (0.001)	0.120* (0.066)	0.000 (0.001)	0.118 (0.074)	-0.004*** (0.001)	0.018 (0.043)
주별 정당지지도	-0.000 (0.002)	0.020 (0.097)	-0.001 (0.002)	-0.148 (0.110)	-0.011*** (0.003)	0.098* (0.054)
통합정부 여부	0.099*** (0.024)	0.327 (2.999)	0.113*** (0.025)	-1.377 (3.307)	0.015 (0.043)	4.359*** (1.298)
의회 전문화	-0.005 (0.004)	0.942** (0.477)	-0.006 (0.005)	1.080** (0.452)	-0.001 (0.006)	-0.079 (0.167)
인구수	0.302*** (0.083)	49.961*** (15.129)	0.325*** (0.090)	61.326*** (15.326)	0.031 (0.117)	2.366 (5.909)
절편	4.479*** (0.123)	-28.944* (17.193)	4.276*** (0.126)	-37.633** (16.680)	3.521*** (0.231)	7.554 (6.973)
N	2724	2724	2724	2724	2724	2724
Log likelihood	-186.741	-85.175	-183.135	-192.019	-102.476	-131.676
Wald Chi <sup>2</sup>	8780.01***	6744.09***	7335.97***	4254.98***	4876.07***	645.65***

알래스카 주와 1999년은 기준변수로서 사용되었음.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 < .10$ ; \*\*  $p < .05$ ; \*\*\*  $p < .01$

자 기부금은 단지 기업과 노동조합에 대한 도전자 기부금만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나타나는 도전자 기부금 변수의 계수 크기(이익집단의 경우 -0.627, 기업의 경우 -0.861, 그리고 노동조합의 경우 -0.311)가 도전자만을 대상으로 분석될 때 보이는 현직자 기부금 변수의 계수 크기(이익집단의 경우 -0.006, 기업의 경우 -0.013, 그리고 노동조합의 경우 -0.447)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sup>36</sup>

36. 물론 현직자 기부금의 효과는 이익단체 전체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lt;표 4&gt; 기부금 제한법과 기부금: 도전자만을 대상으로

	전체이익집단		기업		노동조합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금 제한법	-0.004 (0.055)	-0.696* (0.410)	0.002 (0.087)	-1.514** (0.590)	0.095 (0.117)	0.899 (0.777)
현직자 기부금	0.000 (0.000)	-0.006 (0.004)	0.000 (0.000)	-0.013* (0.007)	-0.015*** (0.004)	-0.447*** (0.159)
개인 기부금	0.009*** (0.001)	0.279*** (0.022)	0.010*** (0.001)	0.196*** (0.031)	0.005*** (0.001)	0.148*** (0.046)
정당 (민주당 → 공화당)	-0.269*** (0.064)	-3.037*** (0.680)	0.161** (0.070)	3.233*** (0.864)	-3.305*** (0.168)	-18.239*** (2.636)
후보자간 경쟁	-0.033*** (0.002)	-0.151*** (0.026)	-0.033*** (0.003)	-0.198*** (0.042)	-0.033*** (0.003)	-0.121*** (0.040)
주별 정당지지도	0.006 (0.004)	-0.005 (0.039)	0.005 (0.004)	-0.040 (0.040)	-0.017 (0.011)	-0.071 (0.079)
통합정부 여부	0.114** (0.052)	0.434 (0.726)	0.191*** (0.055)	-0.168 (0.815)	0.049 (0.096)	-0.356 (0.889)
의회 전문화	0.012 (0.011)	-0.085 (0.142)	0.020* (0.012)	0.101 (0.151)	-0.022 (0.018)	-0.260 (0.205)
인구수	-0.053 (0.188)	7.396** (3.252)	-0.079 (0.194)	9.852*** (3.600)	-0.430 (0.319)	-4.215 (2.809)
절편	3.667*** (0.347)	8.322** (3.597)	3.231*** (0.376)	5.048 (3.511)	3.673*** (0.593)	15.197*** (4.508)
N	2724	2724	2724	2724	2724	2724
Log likelihood	-203.989	-189.092	-189.943	-180.575	-81.031	-94.429
Wald Chi <sup>2</sup>	2237.850	1118.700	2275.680	710.120	1599.990	214.070

알래스카 주와 1999년은 기준변수로서 사용되었음.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 < .10; \*\* p < .05; \*\*\* p < .01

또한 정당 변수도 현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도전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물론 다른 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기업은 공화당 후보를 노동조합은 민주당 후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과 노동조합의 기부금을 합산한 전체 이익단체의 경우, 분석대상이 현직자만일 경우에는 공화당 후보가 선호되는 반면 분석대상이 도전자일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선호되었다. 이에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후보자 간 경쟁 변수 또한 현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도전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현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

석의 경우, 6개의 계수 중 단지 2개의 계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으면, 유의성을 확보한 변수 또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반면에 도전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모든 후보자간 경쟁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물론 개인 기부금 변수와 같이 현직자, 도전자 모두에 있어서 유사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 변수도 존재했다. 즉 개인 기부금이 증가하면 현직자와 도전자 모두 이익단체, 기업, 그리고 노동조합으로부터 많은 기부금액을 자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변수도 이익단체와 기업의 기부금액에 대해 현직자, 도전자 모두에게 있어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즉 주의 인구가 많을수록 이익단체 전체와 기업의 기부금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에서 보여지듯이 기부금 제한법은 이익집단, 특히 기업의 기부횟수와 기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과 2). 이와 같은 기부금 제한법의 규제적 효과는 현직자를 대상으로 분석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에 기부금 제한법이 현직자 우위의 기부경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이론은 이익집단 전체, 기업, 그리고 노동조합의 기부금 분석 어디에서도 뒷받침되고 있지 않았다(가설 3과 4). 그리고 현직자와 도전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이러한 이론은 경험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았다.

## V. 결론 및 함의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에서의 정치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기부금 제한법은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시민들의 참여 증대를 목적으로 미국의 많은 주에서 채택,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부금 제한법의 의도된 목표 중 첫 번째인 기부금 제한법의 이익집단에 대한 규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기부금 제한법의 의도치 않은 효과, 즉 기부금 제한법이 현직자 우위의 기부경향을 강화시킨다는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분석결과에서 보여지듯이, 기부금 제한법은 이익집단의 기부횟수와 기부금

액 모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익집단의 하부단위인 기업의 기부금에서 이와 같은 기부금 제한법의 규제적 효과는 더욱 두드러졌다. 한편 기부금 제한법이 현직자 우위의 기부경향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은 경험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기업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제한법은 현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부금 제한법이 제도가 의도한 바와 같이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의도치 않은 현직자 위주의 기부경향을 심화시키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미국의 정치자금법이 현 추세인 규제적 기부금 제한법 노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또한 기부금 제한법이 선거 형태에 따라 차별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 지사 선거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엄기홍, 2004), 주 의회 선거에서도 기부금 제한법은 이익집단의 기부횟수와 기부금액을 감소시켰으며, 현직자 중심의 기부경향을 강화시키지 않고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정치자금 제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미흡한 한국 학계에 의미하는 바가 있다 할 수 있다. 그간 한국에서의 정치자금 연구는 정치자금 데이터의 미비로 말미암아, 제도에 대한 서술적 분석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었다(김영래, 1992, 1994, 2002; 신명순, 1994). 다행히도 최근에 들어 정치자금 데이터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정치자금의 효과를 분석하는 일련의 시도들이 있었다(김의성, 200; 임성학, 2002, 2005; 전용주, 서영조, 2005).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에서의 정치자금 “제도” 분석은 근본적인 한계점을 갖고 시작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치자금 제도는 해당 선거주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개인이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회원으로서 연간 500만원이며, 이와 같은 규제는 의원 후원회마다 다르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일말의 해결책으로서 상이한 정치자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주 의회 선거를 연구함으로써 제도의 효과를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 부록

&lt;부록 1&gt; 사용된 주별 선거연도

주	선거연도	주	선거연도
알래스카	2000, 2002	몬테나	2002
알칸사	2000	뉴멕시코	2000, 2002
캘리포니아	2000, 2002	네바다	2000, 2002
콜로라도	2000, 2002	뉴욕	2000, 2002
코네티컷	2002	오하이오	2000, 2002
델라웨어	2000, 2002	오클라호마	2000, 2002
플로리다	2000, 2002	오레곤	2000, 2002
조지아	2000, 2002	펜실베이니아	2000, 2002
하와이	2002	로드아일랜드	2000, 2002
아이오와	2000, 2002	남 캐롤라이나	2000, 2002
일리노이	2000, 2002	테네시	2000, 2002
인디애나	2000, 2002	텍사스	2000, 2002
캔사스	2000, 2002	유타	2000, 2002
켄터키	2000, 2002	버지니아	1999, 2001
메인	2000, 2002	워싱턴	2000, 2002
미시건	2000, 2002	윈스칸신	2000, 2002
미네소타	2000, 2002	와이오밍	2000, 2002

&lt;부록 2&gt; 종속변수 요약치

	평균	표준오차
이익집단 기부횟수	69.07	113.03
이익집단 기부금액(단위: 1,000달러)	30.90	96.84
기업 기부횟수	61.70	105.29
기업 기부금액(단위: 1,000달러)	25.33	79.48
노동조합 기부횟수	7.37	16.09
노동조합 기부금액(단위: 1,000달러)	5.57	23.73

&lt;부록 3&gt; 독립변수 요약치

	평균	표준오차
현직자	0.35	0.48
도전자	0.35	0.48
공석후보	0.29	0.46
정당	0.50	0.50
후보자간 경쟁	27.62	19.01
주별 지지도	47.83	7.84
통합정부 여부	0.00	0.59
의회 전문화	27.49	22.98
인구수(단위: 100,000명)	8.02	7.63

## 참고문헌

- 김영래. 1992. “한국의 정치자금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26권. pp. 113-143.
- 김영래. 1994. “정치자금제도의 변천과정과 특징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28권. pp. 27-49.
- 김영래. 2002. “정치부패와 정치자금 투명성 개선방안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22권. pp. 125-142.
- 김의성. 2004. “정치자금과 선거결과: 16대 총선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8권. pp. 285-302.
- 신명순. 1994. “정치자금의 현황과 문제: 비선거시 공식적 정치자금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7권. pp. 157-181.
- 엄기홍. 2004. “미국의 정치 기부금 제한법과 이익집단: 주 차원의 경험적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8집. pp. 459-482.
- 임성학. 2002. “제16대 총선 선거자금의 조달과 지출: 인터뷰자료의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3호. pp. 245-454.
- 임성학. 2005. “17대 총선의 선거자금과 정치개혁의 효과.”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2호. pp. 195-493.
- 전용주 . 서영조. 2005. “개정 정치자금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정책대안: 정치자금 기부규제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1권 1호. pp. 93-119.
- 조성대. 2000. “미국 정치활동위원회의 정치자금기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종기업전문가단체의 사례.” 『국제정치논총』, 제40집 1호. pp. 101-120.
- Aranson, Peter H. and Melvin J. Hinich. 1979. “Some Aspects of the Political

- Economy of Election Campaign Contribution Laws.” *Public Choice* 34. pp. 435-461.
- Berry, Jeffrey M. 1997. *The Interest Group Society*. New York: Longman.
- Bibby, John F. 1998. *Politics, Parties, and Elections in America*. 3rd ed. Chicago: Nelson-Hall Publishers.
- Box-Steffensmeier, Janet M. and Jay K. Dow. 1992. “Campaign Contributions in an Unregulated Setting: An Analysis of the 1984 and 1986 California Assembly Elections.” *Western Political Quarterly* 45. pp. 609-628.
- Carey, J. M., R. G., Niemi and L. P. Powell. 2000. “Incumbency and the Probability of Reelection in State Legislative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62. pp. 671-700.
- Conway, M. Margaret, Joanne Connor Green, and Marian Currinder. 2002. “Interest Group Money in Elections.” in *Interest Group Politics*, 6th ed, edited by Allan J. Cigler and Burdett A. Loomis. Washington D.C.: CQ Press. pp. 117-140.
- Eom, Kihong. 2006. “Campaign Finance Regulations and Individual Contributions in the American States.” Unpublished Manuscript.
- Eom, Kihong and Donald A. Gross. Forthcoming. “Democratization Effects of Campaign Contribution Limits in Gubernatorial Elections.” *Party Politics*.
- Fuchs, Ester R., E. Scott Adler and Lincoln A. Mitchell. 2000. “Win, Place, Show: Public Opinion Polls and Campaign Contributions in a New York City Election.” *Urban Affairs Review* 35. pp. 479-501.
- Gross, Donald A. and Robert K. Goidel. 2003. *The States of Campaign Finance*. Columbus. Ohio: Ohio State University Press.
- Gujarati, Damodar N. 2003. *Basic Econometrics*, 4th ed. New York: McGraw-Hill.
- Hersch, Philip L. and Gerlad S. McDougall. 2000. “Determinants of Automobile PAC Contributions to House Incumbents: Own Versus Rival Effects.” *Public Choice* 104. pp. 329-343
- Hinich, Melvin J. 1977. “A Model for Campaign Contributions.” in *American Re-evolution: Papers and Proceedings*, edited by R. Auster and B. Sears Tucson. Arizona: University of Arizona, pp. 47-52.
- Hogan, Robert E. 2000. “The Costs of Representation in State Legislatures: Explaining Variations in Campaign Spending.” *Social Science Quarterly* 81. pp. 941-956.
- King, Gary. 1998. *Unifying Political Methodology: The Likelihood Theory of Statistical Inference*. Michiga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ong, J. Scott. 1997.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Malbin, Michael J. and Thomas L. Gais. 1998. *The Day After Reform*, 1st ed. New York: Rockefeller Institute Press.

- McDevitt, Ronald D. 1978. "Congressional Campaign Finance and the Consequences of Its Regulat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ta Barbara.
- Moncrief, Gary F. 1988. "Dimensions of the Concept of Professionalism in State Legislatures: A Research Note." *State and Local Government Review* 20. pp. 128-132.
- Morton, Rebecca and Charles Cameron. 1992. "Elections and the Theory of Campaign Contributions: A Survey and Critical Analysis." *Economics and Politics* 4. pp. 79-108.
- Mutz, Diana C. 1995. "Effects of Horse-Race Coverage on Campaign Coffers: Strategic Contributing in Presidential Primaries." *Journal of Politics* 57. pp. 1015-1042.
- Poole, Keith T. and Thomas Romer. 1985. "Patterns of Political Action Committee Contributions to the 1980 Campaigns for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Public Choice* 47. pp. 63-112.
- Snyder, James M. 1990. "Campaign Contributions as Investments: The U. S. House of Representatives, 1980-1986."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pp. 1195-1227.
- Snyder, James M. 1993. "The Market for Campaign Contributions: Evidence for the U.S. Senate 1980~1986." *Economics and Politics* 5. pp. 219-240.
- Sorauf, Frank J. 1992. *Inside Campaign Finance: Myths and Reali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tratmann, Thomas. 1998. "The Market for Congressional Votes: Is Timing of Contributions Everything?" *Journal of Law & Economics* 41. pp. 85-113.
- Stratmann, Thomas and Francisco J. Aparicio-Castillo. 2001. "Competition Policy for Elections: Do Campaign Contribution Limits Matter?" Unpublished Manuscript.
- Thomas, Scott E. 2003. *The Presidential Election Public Funding Program A Commissioner's Perspective*. Task Force on Financing Presidential Nominations Report. Washington, D.C.: Campaign Finance Institute. <http://www.fec.gov/members/thomas/thomasarticle08.pdf>, visited on April 11, 2005.
- Welch, William P. 1974. "The Economics of Campaign Funds." *Public Choice* 20. pp. 83-97.
- Welch, William P. 1980. "The Allocation of Political Monies: Economic Interest Groups." *Public Choice* 35. pp. 97-120.

## Campaign Contribution Limits and Interest Groups: Further Evidence from State House Elections

Kihong Eom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State Governance at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whether campaign contribution limits reduce the influence of interest groups, measured by the number and amount of contributions. In addition, it also investigates one of possible unintended consequences: increasing disparity in contributions between incumbents and challengers in favor of incumbents. After examining 34 state house elections during the period of 1999 to 2002, I found that the presence of contribution limits decreases contributions of interest groups in numbers and amounts. These effects were not accompanied by the unintended consequences; in fact, the presence of limits tends to rather decrease disparity in contributions. The findings provide further evidence of positive effects of contribution limits, which were previously found in gubernatorial elections. Regardless of electoral settings, gubernatorial elections or state house elections, contribution limits reduce the influence of interest groups without negative consequenc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restrictive contribution limits should remain in the current direction.

Key Words: Campaigning Contribution Limits, State House Elections, Interest Groups, Negative Binomial Model, Tobit Model

